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권조사 요건에 계엄·재난·사회적참사 명시〉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81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 · 이수진 · 박해철 · 박지혜 · 김 윤 · 박지원
노종면 · 윤종균 · 김예지 · 조계원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1.

3. 회 부 일 : 2024. 12. 12.

※ 의안번호 : 638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

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요건에 비상계엄·경비계엄, 자연재난·사회재난, 사회적참사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② (생략)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의 <u>진정이 없는 경우에도</u>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 <u>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등</u> ----- ----- ----- -----.
<신 설>	1. 「계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엄 및 같은 법 제2조제3항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신 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및 같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 설>	3.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참사의 경우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진정

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진정에 의한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당사자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²⁾

직권조사의 요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근거’나 ‘내용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① 최소한 구체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고 ② 보호하여야 할 인권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③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음.³⁾

한편,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337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338

(2024. 12. 9. 및 12. 23.)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심의하였는데,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하되 계엄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여 마련하기로 하였음.⁴⁾⁵⁾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현행법상 직권조사 요건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발생 개연성이 높고 그 내용의 중대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①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⁶⁾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⁷⁾ ③ 다수

4) 국가인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현안보고」, 2025, p.5

5) 참고로, 2024. 12. 11.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된 '12월 3일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서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인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4. 12. 11.), "12월 3일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pp.1~2).

<보도자료 일부 발췌>

- ☐ 우리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발생합니다.
- ☐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인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6)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관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참사⁸⁾를 직권조사 요건의 예시로 명문화함으로써, 해당 상황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상 직권조사 요건에 대한 예시로 ‘비상계엄·경비계엄, 자연재난·사회재난, 사회적참사 등⁹⁾’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달리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경비계엄, 자연재난·사회재난, 사회적참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법 해석상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⁰⁾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 제30조제3항제3호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참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① ‘사회적참사’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② 개정안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8) 사회적참사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음. 참고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세월호참사’에 대해서만 정의의 규정을 두고 있음.

9) ‘등’은 명사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임(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1003).

10) 즉, 개정안의 예시로 인하여 직권조사 요건이 현행법보다 엄격하게 될 여지가 있음.

회재난'의 정의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¹¹⁾ 이상의 피해'등인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참사'는 개념상 '사회재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 제30조제3항제3호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²⁾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12) 그 밖의 경미한 자구 수정을 포함한 법제적 측면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1항의 <u>진정이</u> <u>없는 경우에도</u>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 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 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u>진정이</u> <u>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u> <u>경우 등</u> ----- ----- -----.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u>진정이</u> <u>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등</u> ----- ----- -----.
<신 설>	1. 「계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엄 및 같은 법 제2조제3항의 경비계엄이 선 포된 경우	1. 「계엄법」 제2조제2항의 비상계엄 및 같은 조 제3항 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신 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 재난 및 같은 법 제3조제1 호나목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 재난 및 같은 호 나목의 사 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 설>	3.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 한 사회적참사의 경우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

문 의 처
02)6788-5017

참고

최근 5년(2020년~2024년) 직권조사 현황

연 도	조사명칭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2020	[스포츠]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운동부의 문화에서 비롯된 관습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진정 사건이 제기된 학교뿐만 아니라 유사한 규모의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인권침해 행위 양상과 그 원인 등을 검토	교육기관	218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0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직권조사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적절성 및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현황, 사전예방 절차 및 사후보호조치, 구조적 관행 등 조사	중앙행정기관	203	정책권고 (제25조제1항)
2020	동일병원 내 부당한 입퇴원 반복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조사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수가 상당하고 그 행위를 병원장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하였다는 내부직원의 구체적인 진술도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다수인 보호시설	177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0	정신의료기관 의사지시없는 격리 강박 등 직권조사	환자들 중 일부가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수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다수인 보호시설	147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연 도	조사명칭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2020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 조사	-	지방자치단체	179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0	학생 대상 업무 수행 시 교육공무직 직원 보호 조치에 대한 직권조사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교육기관	126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0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건강권 직권조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간호사가 특정 이용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이용인 건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조사	다수인 보호시설	227	직권조사 종결
2020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자격 제한에 의한 평등권 침해	각 교육청에서 법률지원단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만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앙행정기관	94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1	군 장병 두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직권조사	공군의 간부,병사 두발 규정 차이 진정접수 후 육군 및 해군까지 범위 확대하여 조사	군	215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1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일부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 및 폭언에 대해서 조사	다수인 보호시설	135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1	서울남부(구) 중증질환수용자 사망관련	사망과정에서 교정시설의 의료조치 제공이 적절하였는지 조사	교정시설	685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거주인 폭행 및 상해	시설 거주인, 현직·퇴사 종사자 대상 면담, 서류 및 CCTV 확인 등 시설 내 거주인 폭언 및 폭행에 관한 직권조사 실시	다수인 보호시설	28	징계권고 (제45조제2항)

연 도	조사명칭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2021	군대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과 제도개선 사항등을 제시하고자 조사	군	191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1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행동제한으로 인한 학습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직권조사	무분별한 ‘필요시 처방 (PRN)’에 따른 행동 제한과 격리 등에 대한 피해자가 다수인 등 피해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따라 직권조사 개시 결정	다수인 보호시설	118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1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이주아동에 대한 또래 집단의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포 사건 관련 교육기관 및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초동 조치 및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 조사	경찰	194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2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관할지역 내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거나 전교생의 기숙사 입소를 의무화하고 있는 150개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함.	교육기관	91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2	사립대학교의 직원채용시 학력 등 차별 직권조사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상 학력 제한 및 학력에 따른 배점 관련 차별에 대한 조사	교육기관	323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2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부당 입원 등 인권침해	정신의료기관 입원절차의 부당 가능성,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유기 가능성 및 과도한 정신과 약물 사용 가능성, 시설 내 일부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 가능성에 대한 조사	다수인 보호시설	112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2	정신의료기관 온세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 격리·강박 가능성,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임의·동의입원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	다수인 보호시설	79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연 도	조사명칭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2022	군의 부실의료에 따른 사망사건 직권조사	육군병사의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망 진정접수 후 군의 의료 대응체계 등에 대하여 확대하여 조사	군	139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2	정신의료기관의 통신제한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피조사기관의 입원실이나 환경이 열악하여 입원환자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에 대해 조사	다수인 보호시설	132	고발 (제45조제1항)
2022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한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환자들의 노동, 의사지시 없는 강박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다수인 보호시설	119	고발 (제45조제1항)
2023	해군 여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성폭력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사건 입회 과정에서 2차 피해 상황 확인되어, 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조사	군	56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3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 제공	청각장애 교원에 대한 수어 및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 제공 실태 및 피해 사례 조사	교육기관	240	정책권고 (제25조제1항)
2023	이장 선출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강원특별자치도)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의 차별 관행과 사례에 대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542	조사중
2023	이장 선출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경기도)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의 차별 관행과 사례에 대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542	조사중
2023	이장 선출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충청북도)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의 차별 관행과 사례에 대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542	조사중
2023	이장 선출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충청남도)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의 차별 관행과 사례에 대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542	조사중
2023	이장 선출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전라북도)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의 차별 관행과 사례에 대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542	조사중
2023	이장 선출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전라남도)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의 차별 관행과 사례에 대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542	조사중

연 도	조사명칭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2023	이장 선출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경상북도)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의 차별 관행과 사례에 대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542	조사중
2023	이장 선출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경상남도)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의 차별 관행과 사례에 대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542	조사중
2023	이장 선출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제주특별자치도)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의 차별 관행과 사례에 대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542	조사중
2023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 체계에 대한 직권조사	2023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 해병 사망사건 입회 후 재난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호 체계가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마련되어 실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 개시	군	125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3	군인 자살사고 예방 체계에 관한 직권조사	2021년부터 현역 입대 판정기준 변경으로 현역병 입대 확대됨에 따라 자살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군의 사고예방체계가 입영인원의 내적인 위험요인을 적시에 식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한 경우에도 적절한 관리체계가 가동되지 않는지 등을 조사 필요	군	294	의견표명 (제25조제1항)
202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주관업체 선발에서의 학벌 차별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대상 출신 강사를 우대하는 평가항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인재양성사업 과정에서의 학벌 차별에 대해 조사	지방자치단체	91	직권조사 종결

연 도	조사명칭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2023	군수용자 사망사고 관련 국군교도소 직권조사	2023. 11 국군교도소 수용자 자살은 국군교도소 첫 사례로서, 국군교도소 수용자 관리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 개시	군	209	의견표명 (제25조제1항)
2024	기업의 외국인 채용 절차상 차별행위 유무에 대한 직권조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달사원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향후 발생할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기업 등 영리단체	118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4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및 그와 관련된 보호조치 미흡이 있었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생명권 침해 사례가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음에 따라 조사	교정시설	126	구제조치 권고 (제44조제1항)
2024	대전교도소 수용자 폭행피해, 보호장비 사용 등 직권조사	2024.10.18.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과 관련한 사실 조사 및 보호장비 사용 관행 조사	교정시설	28	조사중
2024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등 차별' 직권조사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 실시 여부, 전담 조사관(경찰, 검사) 교육 현황, 제도개선 사항 조사	수사기관	31	조사중
2024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불법 격리 강박 및 폭행 등 직권조사	보호사에 의한 입원환자 폭행·상해·성폭행 등 인권침해 등에 대해 조사	다수인 보호시설	17	조사중
2024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격리 수용 및 비인도적 처우 등 직권조사	입·퇴원 과정의 적법성 여부, 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강박 여부 등에 대해 조사	다수인 보호시설	17	조사중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